

##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999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3. 3.

발의자 : 김영춘 · 이개호 · 박정

최인호 · 이학영 · 도종환

윤영일 · 박홍근 · 윤관석

위성곤 · 김정우 · 서영교

김철민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선원의 훈련·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(1978)」의 2010년 개정규정에서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(Able seafarer)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됨.

이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,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6호의2 신설).

##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호의2. “유능부원”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말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의2. “유능부원”이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말한다.</u></p>
<p>7. ~ 22. (생 략)</p>	<p>7. ~ 22. (현행과 같음)</p>